

# 漁船用品의 型式 및 製造施設 承認制度 解説

韓國漁船協會 檢査管理部

## 1. 형식승인

- 어선용품의 원형에 대하여 안전상의 기술요건 전반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미리 시험·검사하고 시험기준에 합격한 형식에 대하여 승인(형식승인)하는 제도로서
-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을 생산시 당해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을 당시와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점정에 합격할 경우 어선에 설치 후 당해 어선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최초의 검사를 생략함.
- 일정형식이 갖추어진 품목(대량생산품)에 적용함.

## 2. 제조시설승인

- 어선용품을 제조하는 제조시설에 대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생산시설과 자체검사장비 및 인원 등을 갖추었는가를 미리 조사·확인하고 시설기준에 합격한 제조사업장에 대하여 승인(제조시설승인)하는 제도로서
- 제조시설승인을 받은 제조사업장에서 어선용품을 생산시 당해제품이 제조시설승인을 받을 당시와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점정에 합격할 경우 어선에 설치 후 당해 어선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최초의 검사를 생략함.
- 형식에 구애없이 자체품질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적용함.

## 3. 본 제도시행의 필요성(장점)

- 어선용품의 품질향상 유도
  - 시험기준에 의거 어선용품별 품질의 기준 설정

- 시설기준에 의거 제조시설사업장의 시설규모, 자체검사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설정
- 검정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 지속적인 자체품질관리가 불가피하도록 함.
- 양산체제에 의한 원가절감 유도
  - 제조과정의 자체검사 일임에 따라 생산체제의 계통화로 생산자의 검사가 가능케 됨으로써 생산기간단축 및 대량생산 가능
- 검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
  - 생산자가 검사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어선검사인력의 절감 및 생산자와 검사자의 협조체제 유지

#### 4. 시행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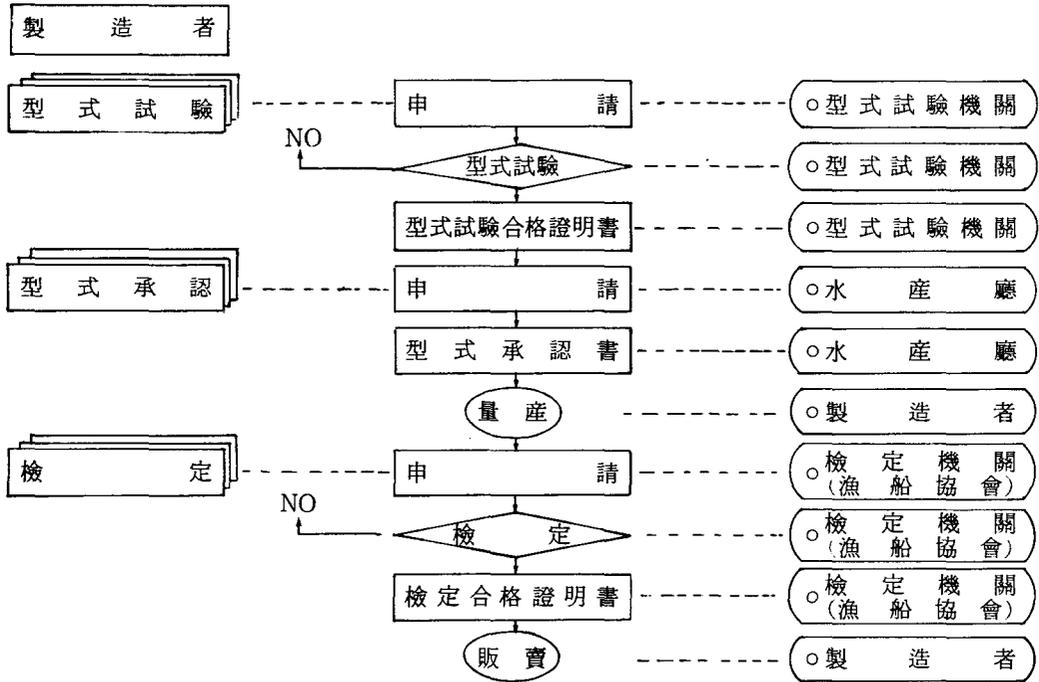
- 형식승인제도(표 1)
  -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어선용품 제조자는 형식시험기관에 대해 어선용품에 대한 형식시험 신청
  - 형식시험기관은 당해 어선용품에 대하여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 후 적합할 경우 형식시험합격증명서 발급
  - 어선용품 제조자는 형식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산청에 형식승인 신청
  - 수산청은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형식승인서 교부
  -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을 생산한 제조자는 검정기관에 검정신청
  - 검정기관은 검정신청수량의 일부를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후 적합할 경우 당해 신청분에 대하여 합격표시를 하고 검정합격증명서 발급
- 제조시설승인제도(표 2)

- 제조시설승인을 받고자 하는 어선용품 제조자는 제조시설조사·확인기관에 당해 어선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조사·확인신청
- 제조시설조사·확인기관은 당해 어선용품 제조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따라 조사 및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제조시설조사·확인서 발급
- 어선용품 제조자는 제조시설조사·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산청에 제조시설승인신청
- 수산청은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조시설승인서 교부
- 제조시설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을 생산한 제조자는 검정기관에 검정신청
- 검정기관은 검정신청수량의 일부를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후 적합할 경우 당해 신청분에 대하여 합격표시를 하고 검정합격증명서 발급
- 형식승인 및 제조시설승인 유효기간 : 3년

#### 5. 기타사항

- 형식 및 제조시설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어선용품의 제조사양서 및 도면은 한국어선협회에서 승인
- 형식시험기관은 지정신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할 경우 수산청장이 지정
- 제조시설조사 확인기관은 한국어선협회(본부)로 지정
- 검정기관은 한국어선협회(지부·출장소·분소)로 지정
- 시험기준, 시설기준 및 검정기준의 기술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로 하여금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

丑1 型式承認制度의 흐름도



丑2 製造施設承認制度의 흐름도

